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8년 11월 10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조례안 입 법 예 고

1. 제정 이유

- 가. 수자원의 고갈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이용을 활성화 하고자 한번 사용한 상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 후 그대로 해양으로 방류하지 않고 재처리하여 화장실용수, 세척용수 등으로 재활용함으로써,
- 나. 공공수역 수질개선과 함께 환경친화적인 생태도시로 경제자유구역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송도경제자유구역 송도공공처리시설(하수처리장)부지 옆에 13,000m³/일 규모의 하수 처리수 재·이용시설을 2006년 11월 착공하여 2009년 1월 준공예정임.
- 다. 시설완공시 하수 재처리수를 송도경제자유구역 1~4공구의 사용자에게 공급함으로서 재이용수의 요금부과로 세수증대는 물론 자원재활용이라는 공공이익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라. 시설 준공 후 공급하는 하수처리수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하나, 사용료·수수료의 징수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여야 함.

- 마. 하수처리 재이용수 요금부과 및 감면혜택 근거, 급수공사비 부담 및 공급조건, 재이용수 급수시설 및 관리 등에 관한 제반사항과 적절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 건강과 먹거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제고됨에 따라 친환경 농업 육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2. 주요내용

- 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조례 제정 목적, 정의, 급수구역 등을 명시(안 제1장)
- 나. 재이용수의 공급에 필요한 급수장치의 설치, 공사의 승인, 공사비 부담, 급수공사 등 관련사항을 명시(안 제2장)
- 다. 재이용수의 급수와 관련한 사항으로 재이용수 사용, 판매금지, 급수 중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안 제3장)
- 라. 재이용수 요금과 수수료의 부과, 요금의 조정, 요금 등의 감면, 가산금 징수규정 등을 명시(안 제4장)
- 마.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공사의 직권시행, 손괴 등의 신고, 관리상 책임, 위탁운영 규정 등을 명시 (안 제5장)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1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참조 : 시의회 산업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33, 팩스 032-440-87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성 명: ○ 연락처:			

4. 참고자료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하수처리수 재이용 시설 설치·운영 조례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수를 위생적으로 재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처리한 재이용수의 공급과 이용요금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이용시설”이라 함은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방류되는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용도별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하는데 필요한 처리시설을 말한다.
2. “재이용수”라 함은 재이용시설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수를 청소용수, 조경용수, 친수용수, 화장실세정수, 유지용수 등으로 재이용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처리한 물을 말한다.
3. “송·배수시설”(이하 “배수시설”라 한다)이라 함은 재이용수를 재이용시설로부터 급수시설까지 송·배수하는 데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4. “급수시설”이라 함은 재이용수를 배수시설로부터 급수장치까지 급수하는 데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5. “급수장치”라 함은 급수시설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인입급수관, 계량기, 기타의 급수에 관련된 시설, 장치 등을 말한다.
6. “흡수정이하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7. “재이용수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8. “전용계량기”라 함은 전용급수장치에 설치한 계량기를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①급수구역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일원으로 한다.

②제1항의 급수구역은 급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급수장치 시설계획이 있는 구역으로 하고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2 장 급수공사

제4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장치 공사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재이용수 급수장치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교체 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 개조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5조(급수장치의 설치의무) 재이용수를 급수 받고자 하는 자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구역 내에 있는 건축물 또는 기타 급수가 필요한 시설물이어야 하며 재이용수 이용을 위한 급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급수장치 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인천광역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규칙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렇지 않다.

②시장은 급수공사 승인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사전에 기존 옥내배관시설에 대한 완전분리공사와 흡수정이하의 장치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공사의 시행) ①급수장치의 설치 및 시공은 급수를 신청하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②시공 시 해당 급수장치에 미리 재이용수 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재이용수 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재이용수 계량기의 설치방법, 설치위치 및 구경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④급수장치에 소요되는 급수관에는 시장이 정하는 색으로 외부도장을 하고 “하수처리수 재이용수”라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 급수신청자는 시장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8조(급수장치 관리) ②급수시설에서 분기되어 전용계량기까지의 시설은 시의 소유로 하고 시에서 관리한다. 다만, 계량기가 대지경계 또는 건축물 안에 있는 경우에는 대지경계까지의 급수관과 계량기만을 관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급수장치는 사용자가 관리한다.

③제1항과 제2항 이외의 건물 또는 대지경계선 안쪽의 급수장치에 대한 손괴, 동파방지 등 선량한 관리의무는 사용자가 진다.

제9조(흡수정이하의 장치 설치) ①시장이 따로 정하는 시설의 사용자는 흡수정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시설 또는 분기된 급수관에 직결하여 가압장치 등 흡수정이하의 장치를 설치 할 수 없다.

제 3 장 재이용수의 급수

제10조(재이용수의 사용신청) ①재이용수를 공급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 재이용수 급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재이용수를 급수신청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급수표지 등) ①시장은 재이용수를 공급받는 사용자에게 급수번호를 명기한 급수표지를 교부 한다.

②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이용설비에는 “하수처리수 재이용수 사용”이라는 표지를 하여야 한다.

제12조(판매금지) 사용자는 재이용수를 다른 목적으로 판매할 수 없다.

제13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등) ①시장은 재해 등 부득이한 경우와 재이용수를 도용하거나 이 조례를 위반하여 사용할 경우에 공급대상 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재이용수 급수를 정지, 중지, 폐전 등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재이용수 급수의 정지, 중지, 폐전 등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4 장 요금과 수수료

제14조(요금의 징수) ①시장은 사용자에게 사용량에 따라 재이용수 사용 요금(이하 “요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②요금은 시설비, 생산비, 판매비, 관리비 등 비용을 감안하여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제15조(사용수량의 인정) ①사용수량은 재이용수 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기타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사유로 사용량을 계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전 3월의 평균치 또는 재이용수 미터기를 교체한 후 5일 이상 사용량의 평균치로 1월 사용량을 환산한 양 중 많은 사용량을 당월 사용량으로 한다.

제16조(요금의 산정) ①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당해월분의 요금을 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월분의 요금으로 산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늦어도 정례일 5일 이내에 산정하여야 한다.

제17조(납기와 징수방법) ①요금은 매월 월납으로 하고 납부마감일은 매월 말일로 하여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18조(가산금) 사용자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을 납기일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납부고지) ①요금은 납부고지서로 고지하여 징수한다.

②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 당월분 고지서에 미수액을 명시하여 미납수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요금 등의 감면) ①시장은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요금을 자동 납부하는 사용자에게는 월사용 요금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③재이용수를 공공용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요금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제21조(일시 재이용수 사용) ①시장은 기타 일시적으로 재이용수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 사용수량을 추정하여 해당 사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사용료는 수시 또는 급수 종료 후 정산한다.

제22조(계량기의 이상시험) ①사용자는 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용오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급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 추징 또는 다음달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의 이상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비용수납은 다음달 요금고지서에 요금과 함께 부과 징수한다. 다만, 시험 결과 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제23조(제수수수료) ①시장은 급수공사 신청 및 승인 또는 계량기 이상시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제7조 제5항의 준공검사 수수료
2. 제22조 제3항의 재이용수 계량기 시험수수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산정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이의신청) ①재이용수 요금, 수수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5 장 시설의 관리

제25조(시설관리 및 공사의 직권시행) ①시장은 급수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설, 사고 등으로 급수시설의 변동 또는 손괴를 입힌 자에게는 손괴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하여야 한다.

②이설 또는 손괴된 급수시설 등의 복구공사는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인으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시장이 한다.

③부담금의 산출과 납부방법, 납부기간 등 필요한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신고) ①재이용수 사용자, 손괴자 등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하고자 할 때
2. 급수시설과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급수장치가 있는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재건축 할 때
5. 기타 시장이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은 재이용수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재이용수 급수 중단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7조(관리상 책임) ①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시설과 급수장치를 보호·관리하여 재이용수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량기를 매몰, 망실, 훼손하거나 물건의 적치 또는 공작물 등의 설치로 계량기 검침 및 관리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③계량기 등 기물을 훼손, 망실하거나 사용자 등의 관리부주의로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사용자의 비용으로 원상복구 및 누수 등에 따른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훼손자가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복구하게 하고 그 비용을 훼손자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관리 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28조(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시장은 재이용수 공급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급수장치 및 흡수정이하의 장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사용자에게 이의 개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9조(재이용시설 등의 위탁운영) ①시장은 경비 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재이용시설의 관리업무와 재이용수 계량기의 점검, 점검, 고지서 송달 등의 업무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하여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민간위탁 운영 시 위탁업무, 위탁수수료 산정기준, 업무처리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민간위탁기관의 선정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술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지역업체를 육성할 수 있도록 참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 6 장 보 칙

제30조(준용) ①재이용수 요금과 그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부담금, 기타 징수의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②급수시설, 급수장치, 급수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를 준용한다.

제31조(권한위임)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권한은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한다.

제32조(시행규칙에의 위임)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재이용수 요금표(제15조 관련)

재이용수 사용요금			
용 도	사용량	요금	비 고
일반용	1 m ³ 당	464원	※ 공공용으로 사용시는 전액 면제한다.

관계 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 법령	☐ 하수도법 ○ 제2조(정의) ○ 제21조(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수의 재이용) ○ 제26조(중수도의 설치) ☐ 하수도법 시행령 ○ 제17조(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수의 재이용) ○ 제21조 (중수도의 설치 등) ☐ 하수도법 시행규칙 ○ 제19조(중수도의 수질기준) ☐ 지방자치법 ○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 제139조 (사용료의 징수조례)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조례 정비대상	
관련자료	

관계법령 발췌사항

□ 하수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공공하수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를 제외한다.
9.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11. “중수도”라 함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다시 처리하여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1조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수의 재이용)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수를 공업용수·화장실용수·살수용수·세차용수·청소용수·조경용수 등(이하 “재이용수”라 한다)으로 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수를 재이용수로 이용 또는 공급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의 범위와 재이용수의 양에 관한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이용수를 공급받는자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받을 수 있다.

제26조 (중수도의 설치) ① 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되는 부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하고자 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용수량의 100분의 10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는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부터 재이용수를 사용수량의 100분의 10이상 공급받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건축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공장으로서 1일 폐수배출량이 1천5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인 시설물

② 중수도의 시설기준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따른 사용수량의 기준, 동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 연면적, 폐수배출량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는 중수도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물을 신축하는 자가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 하수도법 시행령

제17조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수의 재이용)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수를 공업용수·화장실용수·살수용수·세차용수·청소용수·조경용수 등(이하 “재이용수”라 한다)으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대상 공공하수처리시설은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말하며, 해당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재이용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양은 1일 하수처리량의 100분의 5이상으로 한다.

제21조 (중수도의 설치 등) ①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인 시설물”이란 건축의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가목에 따른 교도소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방송국 및 전신전화국
6. 그 밖에 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설치방법 등에 관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0조 (중수도의 수질기준) 중수도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중수도의 수질을 별표 6의 수질기준에 맞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별표 6] <개정 2007.10.24>

중수도의 수질기준(제20조 관련)

구분	수세식 화장실용수	살수용수	조경용수	세차·청소용수
대장균군수	불검출/100mL	불검출/100mL	불검출/100mL	불검출/100mL
잔류염소 (결합)	0.2mg/L 이상 일 것	0.2mg/L 이상 일 것	—	0.2mg/L 이상 일 것
외관	이용자가 불쾌감 을 느끼지 아니 할 것	이용자가 불쾌감 을 느끼지 아니 할 것	이용자가 불쾌감 을 느끼지 아니 할 것	이용자가 불쾌 감을 느끼지 아 니할 것
탁도	2NTU를 넘지 아니할 것	2NTU를 넘지 아니할 것	2NTU를 넘지 아니할 것	2NTU를 넘지 아니할 것
생물화학학적 산소요구량 (BOD)	10mg/L를 넘지 아니할 것	10mg/L를 넘지 아니할 것	10mg/L를 넘지 아니할 것	10mg/L를 넘지 아니할 것
냄새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아니할 것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아니할 것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아니할 것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아니할 것
pH	5.8~8.5	5.8~8.5	5.8~8.5	5.8~8.5
색도	20도를 넘지 아 니할 것			20도를 넘지 아니할 것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 Mn기준)	20mg/L를 넘지 아니할 것	20mg/L를 넘지 아니할 것	20mg/L를 넘지 아니할 것	20mg/L를 넘지 아니할 것

비고

1. 대장균군수, 잔류염소, 탁도, 냄새는 먹는물공정시험방법에 따라 분석하여야 한다.
2.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pH, 색도, 화학적 산소요구량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분석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17>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개수(改修)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1급하천, 지방2급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파.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제139조 (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과태료 처분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 제140조를 준용한다.